

기관추천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30세대

■ 기관추천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		62A	62B	72	84A	84B	84C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	1	1	2	1	1	7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1	0	2	1	0	5
	중소기업 근로자	1	1	1	2	2	1	8
	장애인	2	2	1	2	2	1	10

■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구분	관련법규	해당기관
국가유공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2호 부터 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국가보훈처 울산보훈지청 보상과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울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울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과 입주자모집공고상 내용이 상이 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이 우선합니다.